

# 2015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

무주국유림관리소 2015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무주국유림관리소장 

## I 모집인원( 40 명)

(단위 : 명)

구 분	계	모집인원				비 고
		무주지역	남원지역	진안지역	장수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0	13	9	9	9	

## II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산림분야경력, 근무여건, 자격증, 기술교육이수, 세대주여부, 건강상태, 과거근무태도 등
- 면접 및 체력검정 : 실무능력 및 소양검증, 체력검정은 채용신체검사 및 윗몸일으키기로 판정

## III 모집일정

공고·접수기간	접수 방법	1차합격자 발표일	면접 및 체력검정	선발확정 발표일	사업착수 예정일
2015. 10. 19(월)~10.23(금) 18시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10.26(월)	10.27(화) 10시부터	10.28(수)	11.02(월)

## IV 접수처

-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 주소 및 전화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 ☎ 063-320-3630~5

## V 신청자격 및 제한

### ○ 신청자격 :

- ①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 ②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모집예정 응시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③ 공휴일(토, 일, 국경일) 근무 가능한 자

### ○ 신청자격의 제한

- ①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②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③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④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 ⑤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
  - ※ 고혈압, 심신질환 등 사업참여에 부적합한 자
- ⑥ 유관기관에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시행기관에 의해 해고된 자 및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자
- ⑦ 무주관리소 및 타 관서에서 시행하는 산림관련 사업에 중복 신청 제한
  - ※(원칙) 특정인이 동일한 기간 중 2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각각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 선발기준(우선순위)

- (1) 선발배점표와 면접 합산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 (2)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림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산불진화차량 운전 및 산불진화차량 조작이 능숙한 자
  - 자동차, 이륜차, 휴대전화 등 보호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산림분야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취업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

- ①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여성가장, ④ 고령자(만 55세 이상), ⑤ 장애인, ⑥ 북한이탈주민, ⑦ 결혼이주자, ⑧ 위기 청소년, ⑨ 성매매 피해자, ⑩ 갱생보호 대상자, ⑪ 노숙인 등

## VI 신청서류

- ①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 접수처 비치, 인터넷 공고(산림청)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②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③ 구직등록증,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④ 채용 신체검사서(보건의료원) 1부.
- ⑤ 취약계층 우대 증빙에 필요한 제출서류
- ⑥ 운전면허증사본/자동차등록증사본
- ⑦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 VII 근무조건

### ○ 임금지급 기준

- 1인/1일 42,000원, (조장수당 50,000원/월 별도)

### ○ 근무시간

- ①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함
- ② 업무 및 계절에 따라 근무 시작과 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③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지정 가능함
- ④ 월 ~ 금요일(주 5일) 개근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 ⑤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
- ⑥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 대상업무(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업무가 포함됨)

대상사업	세부 사업내용
산불예방 및 진화	(1) 산불진화 및 계도활동 (2)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등 감시 (3)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행위 감시 (4) 산불조심 깃발·입간판 등 홍보물 설치·관리 (5) 인화물질 제거 활동 및 마을 공동소각 지원 (6) 목조건축물(사찰 등) 주변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 조성 (7) 산불 발생시 진화활동 참여 및 대책본부 지원 (8) 뒷불감시 참여 및 진화장비 관리

- 가. 1일 8시간을 기준, 산불발생위험도, 지역실정과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

(예) 조기근무 : 08:00 ~ 17:00, 정상근무 : 09:00 ~ 18:00, 조정근무 : 10:00 ~ 19:00

※ 방화성·야간 산불 다발지역의 경우에는 야간근무조를 운영

## VIII 유의사항

-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개인별로 지급이 될 예정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 (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세부 항목별로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됩니다.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일용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 불허 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지침에 따릅니다.
- 이번 모집기간에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인원을 총원하고 우선순위에 밀린 참여희망자는 대기자로 등록하여 추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총원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우대사항 : 해당자만 기재 합니다.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훈대상 등 취약계층 여부 및 우대사항 확인정보제공 동의 등 기재(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미기재 가능)
  - ※ 우대사항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하신 경우, 채용기관에서 읍·면·동 주민 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출 합니다.
- 문의: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63-320-3633~5

- 붙임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신청서  
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붙임 제1호 서식】

<b>2015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응시원서</b>					
종사업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업무 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응시 번호
성명	(한글)	최종학력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전화 : ) (휴대폰 : )				
경력					
병역	① 필 ② 미필 ③ 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제조업,자영업,서비스업, 공무원,학생,농어업,주부,기타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본인)					
위 본인은 2015년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모집에 응시코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사    진 (3×4cm) 반명합판
2015년    월    일 <b>무주국유림관리소장    귀하</b>					

<b>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응시표</b>			
종사업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업무 보조,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		응시번호 시험일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2015년    월    일			시험장소 무주국유림관리소
<b>무주국유림관리소장</b>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가.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 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다. 연 령 : 2015년도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 라.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 마. 학 력 : 본인의 최종 학력을 기재합니다.
- 바. 경 력 : 산불관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고, 다른 공무원  
임용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 사.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

아.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li> <li>●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1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2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3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4인</th> <th style="text-align: center;">5인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1,421,929</td> <td style="text-align: center;">2,832,328</td> <td style="text-align: center;">4,067,545</td> <td style="text-align: center;">4,634,480</td> <td style="text-align: center;">4,671,76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853,157</td> <td style="text-align: center;">1,699,397</td> <td style="text-align: center;">2,440,527</td> <td style="text-align: center;">2,780,688</td> <td style="text-align: center;">2,803,05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li> </ul>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21,929	2,832,328	4,067,545	4,634,480	4,671,763	60%	853,157	1,699,397	2,440,527	2,780,688	2,803,058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21,929	2,832,328	4,067,545	4,634,480	4,671,763														
60%	853,157	1,699,397	2,440,527	2,780,688	2,803,058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li> </ul>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li> <li>●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li> <li>● 20세 ~ 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li> </ul>																		
고령자 (만 5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li> </ul>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li> <li>●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li> </ul>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li> </ul>																		

	구 분	첨 부 서 류	
	여성가장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등록부</li> <li>•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li> </ul>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위기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li> <li>•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li> <li>•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li> <li>•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li> </ul>		
성매매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등의 확인서</li> </ul>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li> </ul>		
갱생보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li> </ul>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li> </ul>		
노숙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li> </ul>		